

# 연구윤리 확보 규정 및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에 관한 규정(3-6-1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학술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예방을 도모하며, 연구부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본 대학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활동이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개정 2019.2.1.)

제3조(적용범위) 연구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2.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2.1.)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2.1.)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2.1.)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2.1.)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개정 2019.2.1.)

6. 가타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 각호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신설 2019.2.1.)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지원 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또는 관계기관(부서)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⑦“시효기산일”이라 함은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날 또는 연구과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의미하며, 만일 해당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구내용 및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논문발표 등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발표일이 시효기산일이 된다.

##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본교 소속의 연구자와 본교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자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논란에 관한 검증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신설 2019.2.1.)

제6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2.1.)

⑥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9.2.1.)

⑦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신설 2019.2.1.)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위원장 및 간사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

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2.1.)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등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제10조(삭제 2019.2.1.)

제11조(예비조사) ①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2.1.)

②예비조사는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개정 2019.2.1.)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2019.2.1.)

④삭제(2019.2.1.)

⑤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신설 2019.2.1.)

⑥위원회는 제보가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신설 2019.2.1.)

⑦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19.2.1.)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3.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5. 조사결과(신설 2019.2.1.)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②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③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④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신설 2019.2.1.)

제14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2.1.)

②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30% 이상 위촉한다.(개정 2019.2.1.)

③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2.1.)

④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본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害)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조사위원회 명단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2.1.)

⑤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2.1.)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②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

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③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신설 2019.2.1.)

④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2019.2.1.)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그 직을 면한 후에도 같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등) ①조사위원회는 위원회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9.2.1.)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9.2.1.)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2.1.)

④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신설 2019.2.1.)

제18조(판정) ①본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한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당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2.1.)

③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소명서의 타당성 검토 및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하며,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재심의를 결정될 경우 재심을 맡은 조사위원회는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소집 후 30일 내에 재조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⑦‘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2.1.)

제19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개정 2019.2.1.)
2. 삭제(2019.2.1.)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개정 2019.2.1.)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개정 2019.2.1.)
5. 조사결과(개정 2019.2.1.)
6.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개정 2019.2.1.)
7. 조사결과에 따른 판정(신설 2019.2.1.)
8.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신설 2019.2.1.)

##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 삭제(2019.2.1.)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2.1.)

1. 징계(신설 2019.2.1.)
2.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신설 2019.2.1.)
3.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신설 2019.2.1.)
4.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신설 2019.2.1.)
5.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신설 2019.2.1.)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신설 2019.2.1.)

②전항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정관 또는 대학교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19.2.1.)

1.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인 경우에는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
2. 제보자가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⑤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제3항의 조치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신설 2019.2.1.)

제22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본조사의 기록과 관련 자료는 주관부서에서 당해 조사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제20조의 보고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관련된 인사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가 진



행 중이더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2.1.)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제척·기피 및 회피)①본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④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2.1.)

제2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 신설 2019.2.1.)

제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①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2.1.)

## 제5장 보 칙

제2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 과제부터 적용한다.